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5
----------	-----

2019년 8월 2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이성배 의원 외 10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성배 의원)

### 가. 제안이유

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나. 주요골자

- (1) 이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단 업무를 총괄하도록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사장) ① (생략)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u>총괄한다</u> . ③ (생략)	제8조(이사장)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 <u>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u> . ③ (현행과 같음)

- 참고로,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성배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동일한 개정내용으로 이번 회기에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표] 참조).

[표] 이성배 의원 발의 조례안 현황

연번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발 의 안	소관위원회
1	834	‘19.8.7.	이성배 의원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통위원회
2	835	‘19.8.7.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3	836	‘19.8.7.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
4	837	‘19.8.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공단의 경영과 관련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기업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해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공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제1항에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2)에는 이미 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의 경영성과 책임에 대하여 동일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공단 이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조례에도 명시하여 강조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여겨지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1)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제8조(사장)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4)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6개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세종) 중 서울시설공단이 ‘17년 4위(‘다’ 등급), ‘18년 2위(‘나’ 등급), ‘19년 1위인 ‘가’ 등급기관에 선정된 바 있음.

[표] 최근 3년간 서울시설공단 경영평가 결과

구 분	2017년 (‘16년 실적)	2018년 (‘17년 실적)	2019년 (‘18년 실적)
평가등급	다 등급	나 등급	가 등급
점 수	88.60점	87.97점	91.16점
순 위*	4위	2위	1위

\* 6개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세종) 중 순위

- 3)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4) 제68조(경영평가)
  -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 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④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본 조례의 개정안에서와 같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는 것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의견은 무엇인지?(홍성룡 위원)

답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당연히 공단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 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해 더 큰 책임감과 경각심을 확인하고 가지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단 경영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할 것임.(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35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성배, 이영실, 권수정,  
임종국, 경만선, 고병국,  
이병도, 권영희, 김정태,  
문병훈, 여명 의원 (11명)

1. 제안이유

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이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사장) ① (생   략)</p> <p>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 단의 업무를 <u>총괄한다</u>.</p> <p>③ (생   략)</p>	<p>제8조(이사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u>.</p> <p>③ (현행과 같음)</p>